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2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9. 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9. 13.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23.)

상정, 심사, 보류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22. 9. 2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 및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 반영
- 2) 고독사의 원인을 1인 가구의 증가로 국한시킴으로써 1인 가구의 부정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기에 주요대상을 조정함으로써 고독사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

나. 주요내용

1) 상위 법령 내용 반영 및 대상의 구체화 (안 제1조)

가) (현 행)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개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나) (현 행) 사회적 고립가구의

(개정안) 구민의

2) '1인 가구'를 정의하는 호 삭제 (안 제2조)

(현 행)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개정안) 삭 제

3) 서울시 조례 개정 사항 반영하여 지원 사업 추가 (안 제8조)

(현 행) 11개 사업

(개정안) 12개 사업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추가)

4) 시행규칙 관련 조문 삭제 (제11조)

(현 행)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삭 제

5) 상위법 인용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제5조, 제7조, 제9조~제10조)

3. 검토보고 (김동원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2022. 9. 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 22-80호로 제출되어, 2022. 9. 13.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 취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 및 「서

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 반영과 고독사의 원인을 1인 가구의 증가로 국한 시킴으로써 1인 가구의 부정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기에 주요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고독사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였음.

○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소외·단절된 1인 가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으로 “사회적 고립가구”를 “구민”으로

제3조제1항 중 “고독사”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으로, “위험으로부터”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로

제4조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하여”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방을”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로 하였으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으로 하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삭제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같은 항 제11호,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11.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중 “안전망 구축”을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으로

제10조 중 “예방사업”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으로 개정하였음

- 따라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 및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취지에 맞게 “예방사업”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으로 개정 및 위화감을 주는 규정은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임.
- 따라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법 취지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히 보완·반영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불임)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2-80관련
----------	---------

발의년월일 : 2022. 9. .

발 의 자 : 차해영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제1조(목적) 중 목적의 대상을 원안대로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고자 함.

제7조(지원대상) 중 지원대상의 범위를 제한, 한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포괄하도록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중 “구민”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수정함.

나. 안 제7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을 “다음”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구민”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하고

제7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을 “다음”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u>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 ----- ----- <u>구민</u> ----- ----- ----- -----.</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 ----- ----- <u>사</u> ----- <u>회적 고립가구</u>----- ----- -----.</p>
<p>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u>다음</u>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p>	<p>제7조(지원대상)----- <u>서울특별시 마포구에</u> <u>주소를 두고 실제 거</u> <u>주하는 다음</u>-----.</p>	<p>제7조(지원대상)----- <u>-다음</u>----- ----- -----.</p>